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운영요령

제정 2006. 5.19

개정 2006.12. 6

개정 2010.10.13

개정 2017. 8.30

개정 2021.12.15

개정 2026. 9.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구인”이라 함은 선원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각호의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체불임금지급사유 확인통지서를 받아 체불임금의 지불을 청구한 자를 말한다.
2. “변제금”이라 함은 『선원법』 제56조에 따라 중앙회가 선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해 기금가입자에 대한 당해 선원의 미지급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당해 기금가입자가 중앙회에 지불하여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7. 8. 30>
3. “관리정지”라 함은 변제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절차나 지급명령신청, 소송의 제기, 강제집행신청, 배당신청 등의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멸정리”라 함은 당해 기금가입자로부터 변제금을 더 이상 추심할 수 없는 경우에 동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기금 가입 및 체불임금 절차 등

제3조(기금 가입 등) ① 회원조합은 규정 제4조에 의한 소속 조합원이 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신청서(이하“가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과 함께 중앙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선원법』 제58조에 따른 임금대장 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질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박검사증서 등 선원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사본 1부
3. 해당 사업허가(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4.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 사본 1부
5. 기타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이하 “지도경제대표이사”이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 등 <개정 2010.10.13, 2017. 8. 30>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조합으로부터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가입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이하 “증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교부하고, 그 결과를 회원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 가입한 자가 증서분실 등 사유로 인하여 증서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산정) ① 기금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은 제3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임금관련 서류를 근거로 산정한 연간임금총액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한 부담금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임금을 산정 또는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금액(승선평균년임금)에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기금가입의 해지 통보) 중앙회는 규정 제6조에 따라 기금가입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금가입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기금가입기간 만료 안내) 중앙회는 기금가입자의 기금가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1월 전까지 기금가입기간 만료안내서를 작성하여 기금가입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가입내용 등의 변경) 기금가입자는 선원이 승하선하거나 임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 회원조합에 통보하고 회원조합은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금가입 해지 및 부담금 환급 신청) ① 기금가입자는 가입선박의 멸실, 해체, 매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조합을 통하여 중앙회로 『기금가입 해지 및 부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 기금가입 해지 및 부담금 환급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2. 가입선박의 멸실, 해체, 매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가입자로부터 『기금가입 해지 및 부담금 환급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금가입 해지 및 부담금 환급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해지사유 발생 다음날부터 미경과 가입기간에 대하여 연간 부담금액을 일할로 계산한 부담금 상당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체불임금 청구 등) ① 청구인은 체불임금지급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가입자 소속 회원조합에 청구하고 회원조합은 중앙회로 신청한다.

1. 선원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 원본
2.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4. 기타 지도경제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0.10.13>

② 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기재사항 등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회원조합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체불임금의 지급) ① 회원조합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중앙회에 체불임금 지급을 신청하고 중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조합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불임금을 청구서에 기재된 임금계좌에 입금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원조합에 통보한다.

<개정 2026. 9. 9>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를 말한다.

③ 선원법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청구권 대위행사 및 부정이득 징수

제10조(청구권 대위 범위) 청구권의 대위 범위는 청구인이 해당기금 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있는 미지급 임금·퇴직금 중 중앙회가 당해 기금가입자를 대신하여 해당 청구인에게 지급한 체불임금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체당금 납부통보 및 채무변제의 촉구) ① 중앙회는 기금가입자의 청구인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때에는 지체없이 1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체당금납부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기금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1항의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독촉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월 이내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5>

제12조(청구권 대위행사 서류 송달) ① 청구권 대위행사에 관한 서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다만, 동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등기우편(배달증명, 내용증명 포함)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부서의 직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조사 등)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면 변제금 강제회수할 것을 대비하여 기금가입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사업장에 대한 재산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동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권리관계 및 회수실익 여부를 검토한 후 회수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가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준용규정 등) 청구권 대위행사와 관련된 권한행사를 위한 소의 제기, 소송수행절차, 강제집행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본회 「적용·징수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15>

제14조(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중앙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체불임금의 반환요구) 체당금 지급 후 체당금 지급관련 처분의 취소,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청구인에게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기금가입자에게 연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관리정지 및 소멸정리

제16조(관리정지의 요건 및 절차) ① 중앙회는 기금가입자에게 독촉을 하여도 완전이행(원금 및 이자·부채채권을 포함한다)이 되지 아니한 변제금이 있을 경우에 그 변제금 또는 변제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경제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변제금의 보전이나 추심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기금가입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기금가입자의 변제금 납부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금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이 우선 채권금액에 미달한 때
3. 변제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때
4. 변제금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보전의 조치를 한 후 기금가입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가망이 없고, 압류할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5. 그밖에 사유로 채권을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1.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1.12.15>

1. 상장유가증서는 담보로 제공하는 날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최종거래가액.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된 사실이 없는 것은 최종매입원가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한다.

2. 토지·건물 등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건설기계 또는 유체동산 등은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3. 기타 재산의 경우 감정기관에게 의뢰하여 평가액을 정한다. <신설 2021.12.15>

③ 관리정지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변제금 관리정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재산조사확인표 (별지 제6호 서식)
3. 별표 1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제17조(관리정지의 취소) 지도경제대표이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정지조치를 한 후, 사정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18조(소멸정리의 요건 및 절차)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지도경제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리한다. 다만, 체당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멸정리 할 수 없다. <개정 2010.10.13>

1. 당해 변제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단, 이 경우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의 승인 등의 시효중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12.15>

2. 기금가입자의 파산·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기금가입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정지 후 사정변경 없이 3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평가방법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소멸정리 승인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변제금 소멸정리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2. 별표 2에서 정하는 관계서류

제19조(소멸정리의 취소) 지도경제대표이사는 변제금에 대하여 소멸정리를 한 후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정리를 취소하고 변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부 칙

이 요령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0.10.13)

이 요령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요령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어업인력지원부
전화번호	02-2240-3163, 3183